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2018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22. 11. 14.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286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12. 18. ‘C는 원고에게 7,329,551원 및 그중 2,365,816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3.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20. 1. 2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E, F, C, G, 피고가 있다.

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1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상속분(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모시고 살았고, 망인과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망인의 장례비 등을 F, G, 피고가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1. 전라남도 해남군 대 2093㎡2. 전라남도 해남군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목조 토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68.76㎡

부속건물 목조 합석지붕 단층 부속 79.33㎡

3. 전라남도 해남군 대 876㎡4. 전라남도 해남군 대 502㎡5. 전라남도 해남군 답 221㎡6. 전라남도 해남군 답 350㎡7. 전라남도 해남군 답 848㎡8. 전라남도 해남군 답 1225㎡9. 전라남도 해남군 답 2910㎡10. 전라남도 해남군 임야 1257㎡ 끝.

